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대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각종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특히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이 자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차량, 에어컨 등 제조물에 따른 복잡한 화재원인을 개인이 규명하기에는 그 한계가 따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협력을 통한 자활지원과 소송 전 당사자간 분쟁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법적지원근거를 마

련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에게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의무 부과와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한 소요 인력과 예산 확보 책무를 부여하고,

화재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분야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한편, 이를 위해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 분쟁 심의·조정 대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화재피해자들이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조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일조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